

고흥군의회 공고 제2024-27 호

「고흥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와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.

2024년 8월 23일

고 흥 군 의 회



고흥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에 따라 의원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입 취지와 무관한 업무 수행을 방지하고 역량 강화 및 공정한 성과관리 등을 통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코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임용 및 배치 등, 근무기간(안 제3조, 안 제4조, 안 제5조)
- 다. 직무범위 및 직무수행 제한(안 제6조, 안 제7조)
- 라. 근무실적평가(안 제8조)
- 마. 비밀엄수 의무 및 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(안 제9조, 안 제10조)
- 바. 교육훈련(안 제10조)

3. 제정조례안 : 붙임

4. 조례안 예고기간 : 2024. 8. 26. ~ 2024. 8. 30.(5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

다. 의견 제출받는 곳

- 1) 우편 : (59542)/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
 고흥군의회의회장 (참조 : 의회사무과장)
- 2) 전화 : 061-830-5032, 팩스 : 061-830-5595

붙임 1. 고흥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.

2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고흥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에 따라 고흥군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정책지원관”이란 고흥군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의정활동을 전문적·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흥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.
2. “관리부서”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.

제3조(임용) ①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둔다.

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제2항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④ 정책지원관의 임명·복무 등은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제4조(배치 등)** ① 고흥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효율적인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사무과에 배치한다.
-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.

- 제5조(근무기간)**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1조의4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. 다만, 업무태만, 근무수행능력 부족,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②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흥군의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1조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
제6조(직무 범위) 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조례 제·개정 및 폐지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수집·조사·분석 지원
2.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3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
4. 의원의 5분 자유발언,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5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·간담회 등 개최, 자료작성, 참석 지원

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제7조(직무수행의 제한) ① 정책지원관은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공직선거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.

1.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
2.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
3.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
4. 선거·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, 업적 홍보 및 지원이 포함된 사항
5. 제6조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

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8조(근무성적평정) ①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 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, 업무추진실적, 업무처리능력,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.

②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.

제9조(비밀엄수 의무)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.

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,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제10조(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)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

누설해서는 안된다.

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,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제10조(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)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의회사무과에 알려야 한다.

제11조(교육훈련) 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수료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 고흥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 _____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 _____

○ 전 화 번 호 : _____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